

2024년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최근 지속적인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중소기업에 유동자금을 공급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전라남도지사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500억원('24년 下 150억원, '25년 上 350억원)

- 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 협약보증 신규 대출 : 200억원('24.) 60, '25.) 140
- 협약보증을 제외한 기타 신규 대출 : 200억원('24.) 60, '25.) 140
- 기존 대출 대환 : 100억원('24.) 30, '25.) 70

* '25년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1)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신규 대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붙임 1]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2) 기타 신규 대출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붙임 2]에 해당하는 업종

(3) 기존 대출 대환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붙임 2]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대환하려는 채무(경영안정자금 포함) 약정금리가 4% 이상인 기업
- 대환하려는 채무가 보증서 대출인 경우 보증서 발급 기관에서 대환보증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
-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4. 지원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단, 금융 중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5.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 금리 : 3.9%(고정금리)

- 협약보증 신규대출 : 보증료율 할인 0.2%p,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 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 협약보증 신규대출에만 해당됨(기타 기관의 보증서를 통한 신규대출 및 대환보증에는 위 우대사항 적용되지 않음)

6. 취급 은행 : 광주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소속 광주·전남본부 영업점이 아닌 지역(단위) 농협은 제외

7. 접수 기간 : 2024. 9.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8.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1.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2.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이용할 경우 신보 '전자 신용보증신청서'로 대체 가능
 - 대환 자금 이용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실행일만기일, 금리, 실행금액 및 현재잔액 표기) 추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영업 등록증, 면허 또는 허가증 1부(사본)
5.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경우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등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이용할 경우 위 건축물대장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6. 최근 1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하거나 홈택스 발행분) 1부
 - 전기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전기 자료로 대체(필요 시 3개년 자료 요청 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기금 통한 접수 진행

9. 기타사항

- ①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③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추천서가 발급되어도 신용보증기금 또는 취급은행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출불가
- ④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취급은행 변경 및 취급기한 연장은 불가함.
- ⑤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후 전라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 ⑥ 신청 서식은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신규 대출 대상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추가) 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용

1. 제조업 영위기업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3.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 「고용창출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른 신규보증 지원 기업
4. 「수출지원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른 수출기업
5.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른 유망서비스 부문 영위 기업
6. 창업 7년 이내 기업
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벤처기업
9. 「스타트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운용기준」 내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 신규 지원 기업

□ 위 대상기업에 해당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거래 중인 기업, 전라남도 지원계획 공고 상 지원 제외 대상으로 운용하는 기업, 신용보증기금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업종 및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보건의료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86101	종합병원	86203	한의원
86102	일반병원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6103	치과병원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6104	한방병원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86105	요양병원	86902	유사 의료업
86201	일반의원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86202	치과의원		

○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

코 드	업종명	포함 세부 업종
47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4719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등
4721 4722	식료품 소매업	곡물, 육류, 건어물 및 젓갈, 수산물, 채소, 빵/과자, 건강보조식품, 조리반찬 등
4723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주류 및 비알콜음료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등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가구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서적, 문구용품, 음반·비디오물, 운동용품 및 자전거, 게임용구, 인형 등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등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 방문 판매업 등
49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2	늘찬 배달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5	야영장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
561	음식점업	식당, 치킨집, 떡집, 제과점 등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점,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등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8224	부동산 분양대행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등
9612	욕탕, 마사지,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등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붙임 2 신규 및 대환 대출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2.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3.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1],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별표 2]
4.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5.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별표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라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평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리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2호 서식]

대출상담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기 업체는 전라남도의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추천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 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현황, 지원 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수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

전라남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20 년 제()차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p>상기와 같이 변경 사항에 대해 신청·신고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p>			
<p><input type="checkbox"/> 불임서류</p> <p>·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p>			

※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rfund.kr>) → 자금 신청 내역 확인 → 변경 신청

11P 관련 법 개정 확인 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6. 12., 2024. 1.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관세법 제 116조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 1)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④ 삭제 <2018. 12. 11.>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